

『데이터센터 운영 사무 수탁기관 지정』 계획 공고

통계법 제37조,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「통계사무의 위탁에 관한 고시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데이터센터 운영 사무 수탁기관 지정 계획을 공고합니다.

2026년 9월 9일

국 가 데 이 터 처 장

1. 데이터센터 운영 사무 수탁기관 지정 신청 개요

가. 지정 신청 관련 일정

구 분	일정
지정계획 공고	'26. 9. 9.(수)~'26.10.19.(월)
지정 신청을 위한 관련 서류 제출기간	'26.10.13.(화)~'26.10.19.(월)
사실조사 및 지정심의	'26.10.20.(화)~'26.10.30.(금)
수탁기관 지정	'26.11월

나. 지정 신청서 제출 장소: 국가데이터처 통계정책과,

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(둔산동, 정부대전청사 3동) 1701호

다. 지정 신청서 제출 방법: 방문 또는 우편

2. 데이터센터 운영 사무의 위탁 범위 및 방법

가. 위탁 사업 범위

사업명(예산)	주요 사업내용
통 계 데 이 터 센 터 서비스 시스템 운영 (1,459백만원)	○ 통계데이터센터 서비스 시스템 운영 지원 ○ 통계데이터센터 서비스 시스템 유지관리 - 시스템 장애 예방 및 성능 관리 ○ 자료 연계를 위한 표준화된 서비스용 DB 구축 ○ 통계 분석 지원을 위한 통계SW 구매 및 사용권 갱신
통 계 데 이 터 센 터 운영 및 환경개선 (2,046백만원)	○ 전국 16개 통계데이터센터 시설운영 및 이용환경 개선 ○ 전국 16개 통계데이터센터 운영요원 인력 채용 및 관리 ○ 센터 이용자를 위한 민간데이터 입수 및 서비스 ○ 보안관리(출입통제, CCTV운영) 업무 지원 ○ 사용자 의견 수렴 및 서비스 개선
AI 분석환경 인프라 유지관리 (300백만원)	○ 통계데이터센터의 VDI 및 AI 분석 환경 서버 등 인프라 유지관리 - 시스템 장애 예방 및 성능 관리

나. 위탁 사업 규모: 3,805백만원(2027년 기준)

-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등의 결과에 따라 매년 변동 가능

다. 계약 방법

- 통계사무의 위탁에 관한 고시 제9조에 따라 3년 단위로 수탁기관을 지정
- ※ 고시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2.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위탁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
3. 제5조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4. 제1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합리적 이유 없이 불이행 하는 경우

- 위탁기간 내에서 위탁업무 범위와 예산변동을 반영하여 매년 사업별 계약 체결
 - 예산(민간위탁사업비) 확보 여부에 따라 민간위탁 중단 가능성 있음

3. 수탁기관 신청 자격

- 신청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
- 시스템 개선·개발 및 운영, 정보시스템 및 DB 구축 사업 경험, 전문기술 인력(특급을 포함하여 다양한 기술등급) 필요
- 통계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

- | |
|--|
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1.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일 것2. 통계의 개발·진흥이나 통계품질진단에 관한 사업을 할 것3.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4.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공신력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을 것 |
|--|

4. 제출서류

가. 통계사무의 위탁에 관한 고시 제6조제2항 등에 따른 제출서류

- 1) 통계사무 수탁기관 지정 신청서 1부
- 2)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각 1부
- 3) 재정현황 관련 문서(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) 및 현황요약 각 1부
- 4) 조직 및 인원현황 각 1부
- 5) 주요 사업내용 및 사업실적 각 1부
 - 국가 및 공공분야 관련 사업 수행 실적 포함
- 6)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각 1부
- 7) 위탁사업 추진 및 관리 계획서 각 1부
- 8) 관련 조직운영 및 분야별 인력투입계획 각 1부
- 9) 보안대책 및 비상대책 각 1부
- 10) 임원의 신원증명서(단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 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등록증 사본) 1부
 - 단, 신원조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
- 11) 기타 수탁기관 지정을 위해 국가데이터처장이 요청하는 자료
 - 사실조사 기간 중 증빙을 위한 추가 요청자료가 있을 수 있음

나. 통계사무 수탁기관 지정 신청을 위한 제안서 관련 서류

1) 제안서 원본 1부 및 요약본 15부(제본) : 전자파일 별도 제출

※ 제안서 목차는 붙임1 참고

2) 제안서 발표자료(PPT로 작성) 15부(제본) : 전자파일 별도 제출

5. 수탁기관 지정 방법

- 「통계사무의 위탁에 관한 고시」 제7조에 따라 제출서류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
- 사실조사 결과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에 대해 위탁심의 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 실시
- 1개 기관 신청 시에도 평가 후 지정여부 결정
- 제안서 평가항목은 붙임 평가기준 참조
- 평가결과 85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를 대상으로 지정 결정

6. 유의사항

가. 통계사무 수탁기관 지정 신청서, 절차 등 제반 사항은 「통계사무의 위탁에 관한 고시」 (국가데이터처고시 제2026-551호) 참조

나. 통계사무 수탁기관 지정 신청서 등 제반 서류는 2026.10.19.(월) 18:00까지 국가데이터처 통계정책과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(제출 서류 전자파일 포함)
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
다.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에 대해 제안서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관련 일정은 추후 별도 공지(유선 또는 이메일)

- 평가회 불참 시 서면평가로 대체

라. 기타 상세한 내용은 국가데이터처 통계정책과(042-481-2401, 3676, 정보미, 황준식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

<붙임1> 제안서 목차 및 평가 기준

1. 제안서 목차

- I. 개요 II. 제안업체 일반현황 III. 사업수행 부문
IV. 사업관리부문 V. 기타

2. 평가기준

평가 부문	평가항목	평 가 기 준	배 점
일반 (30)	사업의 이해도	○ 위탁사업 내용의 이해도: 필요성 및 기대효과 ○ 예상 문제점 및 대응방안	10
	제안내용의 적정성	○ 사업범위 및 세부사업 내용과의 부합성 ○ 추진체계 및 일정 등의 적정성	10
	실적	○ 국가 및 공공분야 관련 사업 수행 실적	10
사업 수행 (35)	사업목표 및 수행계획의 적정성	○ 사업수행에 대한 목표 수립의 적정성 ○ 세부계획 수립의 구체성, 명확성, 적정성	10
	위탁사업 운영 효율성	○ 위탁사업 운영 효율화를 위한 방안 - 세부사업간 연계 운영 등 효율성 제고 방안	10
	사업 역량 적정성	○ 사업수행 관련 정보 및 자료 확보 ○ 참여인력의 전문성, 통계실무 경험 및 노하우	15
사업 관리 (35)	사업수행 조직	○ 위탁 사무별 조직 구성 및 관리 방안의 적정성 ○ 사업수행을 위한 인력운영계획의 적정성	15
	보안관리	○ 사업 중 취득한 비밀에 대한 누설 방지 대책 ○ 국가데이터처 보안 준수사항 준수 방안 제시	10
	교육훈련 및 민원대응 등 지원	○ 운영위탁 및 서비스 교육 등 지원 방안 - 서비스 운영, 민원응대, 장애대응 등 교육지원 ○ 위탁사업 관련기관 대응 전략	10